

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(안 제2조)

○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,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(안 제3조~제4조)

○ 시·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위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도시재생위원회 설치, 전담조직 설치, 시·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